

##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규모 발전원의 개별접속으로 인한 국토, 전력망 등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방지 등을 위해 한전이 구축한 공동접속설비에 다수의 발전사 소유 발전기를 연계하는 에너지허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발전 허가를 취득한 발전사업자가 공급전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 허가 시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이 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변경 발전허가 대상 사업자의 전력계통 여건을 신규 발전허가와 동일하게 검토하는데,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접속가능시기가 기존보다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한전의 공동접속설비를 사용하는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사항 변경(안 제5조)

- 1)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토록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 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급전압.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 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u>공급전압</u>                                                            | 2. <u>공급전압.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